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9

# 제 주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7구합604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redacted] |
| 피 고 | [redacted]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23. |
| 판 결 선 고 | 2018. 9. 5. |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B 외 3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9

10,10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억 3,600만 원, 지방교육세 1,360만 원, 농어촌특별세 680만 원, 합계 1억 5,640만 원을 신고하고, 2014. 10. 30.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A의 주주인 소외 C, D이 이 사건 토지는 A의 유일한 영업용 자산으로서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 2014. 10. 29. 개최된 A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0482), 2016. 4. 21.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6.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48), 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7. 1. 9.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A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이후 원고와 A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화해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라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9

리의무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멸하고 종래의 법률관계와 무관한 새로운 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창설되므로, 부동산 취득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후발적 사유로서, 원고가 A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29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한 2016. 10.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때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4. 7. 제기한 경정청구는 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영

판사 김봉준

판사 이혜진